

주주총회의 실무(III)

최성현 차장(조사부)

VIII. 총회의 개최

1. 회의장 준비

- 총회장의 설치·운영은 총회를 소집한 회사(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선정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주주가 발언하기 쉽도록 총회장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으며 총회장에 경비인원도 과도하게 배치하지 않고 사원주주등도 대부분 참석시키지 않고 있는 추세임.

(1) 회의장 선정의 기준

- 정관상 소집지 내에 있어야 하고, 주주들이 참석하는데 교통상으로 불편하지 않고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라야 함.
-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통상 주주 전원이 출석하지는 않으므로 출석이 예상되는 주주 수를 고려하여 회의장을 준비토록 함.
- 회사는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회의장으로 선정해야 함.

◇ 추첨을 통한 일부 주주의 총회장 출입통제 기능 여부

- 현실적인 장소적 제한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장소가 참석주주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총회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주주들을 입장시키고 추첨 등을 통해 참석주주를 결정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하는 의사진행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참석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이 총회의 의사진행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회의장의 배치·정리

- 회의장 외부(건물의 현관, 승강기 앞 등)에 『○○주식회사 제○○기 주주총회』를 명시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장에 이르기까지 안내 표시물을 설치하고 접수석은 회의장 입구에 설치토록 함. 다만, 회의장 입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건물출입구 등에 접수석을 마련할 수 있음.
- 회의장 내는 의장석, 임원석(이사 및 감사), 보고석(사회석), 주주석 및 기록, 방청석 등으로 구분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정면 한편에는 의사일정을 게시토록 함.
- 기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녹음장치를 준비하고 마이크도 회의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3조).

(3) 회의장의 경비

- 총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경찰관의 임석을 요청하며
- 경찰관의 회의장 출입에 대하여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토록 함.
- 사내 경비조를 편성하여 의장의 퇴장명령 및 회의장 내 혼란사태 발생에 대비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4조).



(4) 담당조의 편성·운영

-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접수, 안내, 마이크, 경비 등의 업무별 담당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각 조의 인원은 총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4조).
- 사전에 접수요령, 총회운영요령 등 각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토록 함.

2. 의결정족수의 확보

-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각 안건별로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여야 함.

※ 총회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① 무의결권 우선주(상법 제370조),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41조), ③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주식(상법 제342조의 2), ④ 상호주(상법 제369조), 기타 특별법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 ⑤ 감사 선임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과 ⑥ 특별 이해관계인이 가지는 주식(상법 제368조 제4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참고판례 : 의결권행사금지처분 결정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여부〉

-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1998. 4.10. 선고 97다50619 판결).

3. 이사·감사 등의 출석 및 참석

(1) 이사·감사·감사인의 출석

- 이사·감사는 비록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총회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는 대체로 소집권자로서 그리고, 총회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이사들도 보고나 의안의 설명을 위해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 감사도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함(상법 제413조).

※ 감사가 사정상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감사업무담당부서장 등이 감사보고서를 대신 낭독하는 경우가 있음.

- 외부감사인인 총회의 출석요구가 없는 한, 구두진술의 의무는 없으며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음.
-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출석 여부는 총회의 성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불출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설명,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이사의 지각을 이유로 총회 개최시간 연기 가능여부
→ 통상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주주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시각을 1시간 정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일부 주주들이 개최시각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개최시간 연기는 부당한 의사진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

(2) 법률고문의 참석

- 주주총회는 법률고문에 대한 조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법률고문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9조 제2항).

(3) 공증인의 참석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등).

-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을 결의장소에 참석시켜 결의절차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그렇지 아니하면 그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아가 위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총회장에는 가급적 공증인을 출석시켜 의사록에 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9조 제3항).

4. 출석주주의 확인 및 보고

(1) 출석주주의 확인

-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회사에서 총회 소집통지서 첨부하여 송부한 참석장 또는 의결권행사서 용지(서면투표제를 채택한 경우)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주주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에 의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

1) 본인 출석의 경우

- 회사에서 송부한 참석장 용지를 지참한 자는 정당한 주주로 간주하고, 참석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절차(Ⅰ)를 거쳐 주주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입장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5조).
- ※ 확인절차(Ⅰ) : 출석자에게 성명, 주소, 주식수 등을 고지하게 하고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주주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그 동일인 여부를 확인함.
- 실무에서는 회사에서 송부한 참석장 용지라 하더라도 날인이 없는 경우 불참으로 처리하고, 확인절차(Ⅰ)시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신분확인을 하는 회사가 많음.

- 서면투표를 채택한 경우 이미 의결권행사서를 회사에 송부한 자가 마음이 변하여 총회에 출석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본인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권행사서 집계에서는 이를 제외토록 함.
-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서 제출자는 주주명부에 표시를 하고 의결권행사서를 주주명부 순으로 편철하는 등의 자료정리방법이 필요함.

〈참고판례 : 위임장 사본·팩스본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포함 여부〉

-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제368조 제3항)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팩스본이나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한 총회장 출입 여부

- 총회장 출입 허가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에 달려 있으므로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님을 이유로 총회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 개최시간 이후에 도착한 주주에 대한 출입통제 여부

- 주주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총회 개최시간 이후에 도착하였다고 하여 총회의 의사진행이 방해되는 등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는 그 주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봄.

◇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주주의 출입통제 여부

- 어떤 주주가 이전의 주주총회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 총회의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케 한 경력이 있다 하여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단하여 그 주주의 총회장 입장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봄.

2) 대리인 출석의 경우

- 회사에서 송부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는 주주 본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정당한 대리인으로 간주토록 함.

※ 회사는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위 임을 허용할 수 있음 (국민은행사건 2001. 9. 29 합병승인결의).

-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 절차(Ⅱ)를 거쳐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판단토록 함 (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6조).

※ 확인절차(Ⅱ) : 주주 본인의 자격요건 및 출석 대리인 본인에 대한 신분증의 확인 절차 외에 위임장에 날인된 주주인감이 회사에 신고된 인감이거나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함.

-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인감까지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상장회사에 있어 실질 주주의 경우는 회사에 제출한 인감조차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인감대조는 사실상 생략되고 있음.
-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의안의 찬반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투표에 의한 표결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엄격한 주주 확인절차(Ⅰ)(Ⅱ)를 시행하여야 함.
- 다만, 회사가 주주확인 절차 등의 이유로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참고판례 : 총회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한 사례〉

-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외부인 방문 일지에 인적사항등 기재요구)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주주의 회의장 입장이 수분간 지체됨을 기회로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봉쇄한 채, 특별결의 안건을 표결하여 가결처리함)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임(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참고판례 : 의결권의 위임이 부당한 사례〉

-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

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위임장 양식을 동봉하는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간주(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1항)하므로 정족수 확보가 필요한 회사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며, 위임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각 항목별로 참고서류를 송부해야 함(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37조).

(2) 출석주식 수등의 보고

- 총회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결의성립에 필요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및 이사가 출석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성립함.
- 총회의 소집자는 총회의 개최시각부터 폐회시각까지 계속하여 주주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 예정된 개최시각이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본인출석과 위임출석을 일괄하여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및 총주주 수와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및 그 주주 수를 발표하고 총회 당일 출석한 의결권있는 주주 수와 그 의결권 수도 보고함.

※ 본인출석에는 참석장 또는 의결권행사서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증권에탁원의 행사주식수가 포함되고 위임출석에는 위임장 용지 또는 포괄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이 포함됨.

- 원칙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주주 수 대신 의결권을 가진 참석주식의 수만을 보고하더라도 의사진행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회사에 제출된 위임장의 수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함.

5. 보고사항의 처리

(1)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상법 제413조의2),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법정(상법 제447조의4)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감사보고 시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할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하고 여기에 상법 제413조에서 요구하는 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인 이상 감사를 둔 회사에서는 감사 중 1인이 대표하여 감사보고를 하고 있으나 감사의 의견이 각각 다른 때에는 각각 보고를 해야 함.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 감사보고를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

(2) 감사인의 감사보고

-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이사의 영업보고

- 이사(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449조 제2항).

-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 사업년도 중에 있었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 최근 일본주주총회의 특징은 ①발언주주의 증가 ②이에 수반되는 회사측의 정확한 설명 ③총회의 장시간화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출석주주에 대해서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①보고사항의 보고부분을 비디오, 슬라이드 등을 사용하여 비주얼 화함으로써 주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②주주질문에 대해서 의안과 보고사항에 한해 폭넓고 정확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IR검 주주총회를 지향하고 있음.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결산기말로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사가 감사인 선임결과를 미리 주주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하고 있음(재경부 유권해석 증권 41207-54, 2002. 2. 19자).

(5)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보고

-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을 할 수 있으나(상법 제343조의2), 상장 및 코스닥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에 결의만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항).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4항).



IX. 총회의 의사진행

1.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 총회의 의사진행은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의 관행과 일반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① 발언자유 원칙, ② 정족수의 원칙, ③ 일동의(일의제)의 원칙, ④ 일시부재의의 원칙, ⑤ 회기불계속의 원칙, ⑥ 다수결의 원칙, ⑦ 토론 자유의 원칙 등이 있음.

2. 의사진행자

- 의장은 주주총회 의사진행을 하는 자로서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을 가지며 주주질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 의장은 민법상 회사와 위임에 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사를 진행하여야 함(민법 제681조).
- 의장이 부당하게 개회선언을 미루거나 폐회를 서두르는 경우, 찬반을 유도하는 경우, 특정 주주의 발언기회를 부당하게 봉쇄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의장을 새로이 선임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봄.

〈참고판례 : 의장의 직무거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총의 효력〉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법률상 및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쇄되었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 경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 의장이 될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거나 개입시정으로 총회장에 장시간 지연도착하게 되는 경우
→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될 것이나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출된 자를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봄.

◇ 의장의 자격기준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규정의 유효성
→ 총회 의장의 자격을 당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한자로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나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관에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3. 의안의 상정, 토론, 표결

(1) 의사진행의 원칙

1) 발언의 허가 및 제한

- 의장은 의견한 태도로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 주주의 질문, 의견표명과 동의를 제출과 이에 대한 임직원의 설명, 답변 등 장내의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1조).

2) 발언의 허용시기 및 순서

- 주주의 질문 및 발언은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만 접수하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발언도 허용하지 않도록 함.
- 발언자의 순서는 ①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②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지 여부, ③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인지 여부를 참작하여 의장이 결정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2조)

3) 발언의 제한 및 금지

- 의장은 정상적인 총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주주를 퇴장시킬 수 있으나(상법 제366조의 2 제3항), 주주 발언의 시간 또는 회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발언의 시간 또는 횟수의 제한 보다 더 강한 퇴장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의 제한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한 가능하다고 봄.
- 따라서, 요지없이 장황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의사진행권을 발동하여 발언시간(1회 5분 이내) 및 회수(의제 1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4조)
- 의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발언, 장내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얻은 발언이라도 연설조의 장광설 등이나 의사방해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도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5조).

4) 질서문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 출석주주가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시켜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퇴장명령도 불사하며 만약 퇴장명령을 받은 자가 스스로 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 등을 시켜 강제 퇴장시키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6조의2 제3항,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15조).
- 실제 퇴장을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어느 정도 경고발언을 한 후 그래도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 퇴장을 명하게 되나, 폭력행위 등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없이 바로 퇴장시킬 수 있음.
- 그러나, 퇴장조치는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주주로 인해 정상적인 총회의 의사진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발언의 종류에 따른 진행방식

1) 주주의 질문

- 주주질문권은 상법상 근거규정은 없으나, 주주권에 내재하는 주주의 권리이므로 주주는 당연히 총회에 상정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집행한 업무와 재산상태 등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고 이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 그러나, 주주의 질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7조).

- ①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 ②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 ③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④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 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정 임원에 대하여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자는 의장이 결정하며, 감사에 대한 질문은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6조).

2) 주주의 찬반의견 표명

- 총회 의안 및 각종 동의에 관한 찬반의견 표명도 적정한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찬반토론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번갈아 나오도록 발언권을 부여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2호).
-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고 하여 발언의 기회를 봉쇄하거나 발언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공연히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것은 피하도록 함).
-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은 의안 표결시 찬성 또는 반대주식수로 나타나므로 의장은 발언자의 수보다 발언자가 갖고 있는 주식수를 고려하여야 함.

※ 실무에서 주주가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사실상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장은 이를 혼동해서는 안됨. 예컨대, 원안통과 동의는 찬성의견에 불과하고 의안의 철회 동의는 의안의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일 뿐이므로 이를 단순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처리토록 함.

3) 주주의 동의

① 새로운 의안의 제출

- 감사인의 선임 동의(상법 제367조), 외부감사인의 출석요구 동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를 제11조)에 대하여는 이를 총회에 부의하고 표결에 의해 처리하며

- 기타 새로운 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위법한 제안으로 각하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9조).

② 수정안의 제출

- 수정동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제안으로 각하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호).

※ 수정동의 : 원동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지는 동의로서 원동의와 관련성을 가져야 함.

- 적법하게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대주주의 위임장 접수등에 의하여 원안가결에 필요한 찬성주식수를 확보하고 있으면 원안을 먼저 심의하며 이 경우 원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8조 제3항, 제36조 단서).

③ 의사운영에 관한 동의의 제출

- 의사운영에 관한 다음 4가지의 동의는 총회결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9조).

i) 질의 종결 동의

ii) 휴게 동의

iii) 총회의 연기, 속행 동의(상법 제372조)

iv) 의장불신임의 동의

- 의장 불신임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의장을 교체하지 않을 수 있고(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당해 의안에 대한 상정과 토론, 표결 후 불신임 동의가 가결된 시점에 의장에서 물러나며,
- 만일 불신임 동의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장이 계속 주주총회를 진행하면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됨.
- 의장이 어떤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까지는 관계없으나, 그로 인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됨.

(3) 의안의 상정

- 총회에서 심의 및 결의할 수 있는 의안은 소집통지·공고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정되며(상법 제363조 제2항, 제3항)
-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의안을 심의·결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상법 제376조).
- 의장은 각 안건을 순서별로 상정해야 하며 1의제 상정의 원칙에 따라 단일 안건씩 상정처리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의안의 성격이나 내용이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과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동시 상정하여 심의도 병합할 수 있음(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39조).

(4) 의안의 토론

- 의안이 상정되고 제안설명이 있으면 본격 심의로 들어가며 대개 출석주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의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이 때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대표이사)으로서의 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임.
- 주주들의 질문은 찬반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안전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는데 그치는 사례가 많음.
- 의장은 이들의 질문내용을 메모를 해 두었다가 그에 알맞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 임원 또는 실무자의 도움을 얻어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며 질문내용이 경영의 깊숙한 부분으로 공개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주주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유보할 수 있고, 주주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성격의 질문에 대하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답변을 끝낼 수도 있음.
- 토론의 종결은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토론을 계속해야 될 의무 또한 의장에게 있다고 봄(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3조).

(5) 표결방법 및 결과의 선포

1) 표결방법

- 실제로 사용되는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투표 등이 있으며(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7조).
- 의안에 대한 가부 확인은 총회장에서 그 수를 헤아리지 않고서도 가능하도록 사전에 확인해 놓도록 함.
-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거나(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 찬반의결수가 비슷하여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예상될 때에는 투표에 의한 표결에 대비하여 사전에 투표용지를 준비해 놓고 입장시 참석장 또는 위임장과 교환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토록 함.

2) 결과의 선포

- 토론이 끝나고 찬반의사가 분명해지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 그 가부를 결정하며
- 표결결과의 선포, 즉 결의의 성립 또는 불성립을 명확히 행하여 후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그러나 찬·반 주식수를 밝힐 필요는 없음(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9조).
- ※ 통상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그렇다고 찬성다수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보다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보통결의사항)' 등과 같은 분명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록에 이를 남겨놓아야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9조).
- 반대세력이 극히 일부의 소액주주들이거나 반대주주의 주식수가 확인되어 의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여부만을 묻고 바로 가결을 선포할 수 있음.

X. 총회 종료후의 절차

1.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

(1) 의사록의 작성

- 주주총회에서 예정된 의사를 전부 심의한 때에는 의장이 폐회선언을 함으로써 총회는 종료되며 그후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 의사록은 결의에 관한 증거문서이며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된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다른 증거에 의해 보충·변경될 수 있음.

1) 작성의무자

- 원칙적으로 총회의 진행책임을 맡은 의장에게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작성의 양식

-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를 참고로 하여 의사진행의 경과 요령(개회에서 폐회까지 회의의 경과를 요약)과 그 결과(각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사록은 본·지점에 비치되어 이해 관계자의 열람용으로 이용되어야 하며(상법 제396조) 등기시에 첨부자료로 되기 때문에 편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재내용

- 의사록에는 ① 총회의 명칭 ② 총회개회 년월일과 개회시각 ③ 총회개회지와 장소 ④ 총주주 수와 그 주식 수(의결권 있는 주식은 별도 표시) 및 출석주주와 그 주식 수 ⑤ 의장의 개회선언 ⑥ 의사진행요령과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과 결과) ⑦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⑧ 의사록 작성 년월일 ⑨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특히, 표결결과에 대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 찬성여



- 부를 명백히 하며,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사, 감사의 선임에 있어 위 피선거자들이 주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선임 등기시 이들의 취임승낙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이를 기재토록 함.
- 회사에 따라서는 속기록을 그대로 의사록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의사록의 작성요령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의사록을 따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해야 할 이사

- 주주총회에 퇴임이사와 신임이사가 함께 출석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새로 취임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충분하며 현행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3) 작성시기

- 상법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지점에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등기신청이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주간 이내에는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

(4) 공증인의 인증

-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등기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5) 비치·공시

1) 이사의 비치의무

-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회사의 기관을 감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등을 본·지점에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396조 제1조).
- 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

리인의 영업소에 주주명부나 사채원부의 복사본을 비치하고 본점에는 이의 원본을 비치할 수 있음.

2) 주주·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권

- 주주 및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는 위 비치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96조 제2조), 이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회사는 열람청구에 정당한 목적, 즉 주주 및 채권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업방해가 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음.
- 정당한 목적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자측에 있으며 회사는 청구자의 부당목적 입증하여야 함.

2. 주주총회에 뒤따른 이사회

-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대체로 그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결의에 뒤따른 일이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통례임. 이에는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들의 업무분장,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 위로금의 결정 등이 있음.
- 또한, 주주총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등에의 신고·보고를 해야 함.

3. 대차대조표 공고(결산공고)

-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되(상법 제448조 제3항), 당해 결산서류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의 명칭과 감사의견도 함께 공고해야 함(결산공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상장법인의 경우 수정된 당기순이익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이러한 공고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으로 정한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 세법의 개정으로 대차대조표에 대한 세법상 공고의무가

없어졌으나,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공고를 의무화한 법상 취지도 다르므로 대차대조표는 결산 주주총회 종료 후 공고하여야 함.

4. 변경등기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등기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 통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이사·감사(감사위원)의 선임·퇴임, 대표이사 변경과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사항 등임.
-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 정관 변경내용에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이나 수권자본금(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 금액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 외국인을 이사로 선임한 경우의 이사선임등기

→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외국인일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이 것임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음(1992.1.15 등기예규 제740호).

다만,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하는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고 봄. 한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그 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와 별도로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시 사 경 제 용 어

4G(Generation)이동통신

『IMT-2000(3G) 이후에 등장할 **4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의 업체들의 기술개발 열기가 뜨겁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4G 이동통신에 대해 이동속도 100Mbps, 정지 상태에서는 1Gbps급 속도를 제공하는 무선통신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ITU는 오는 2007년 6GHz 이하의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4G 표준화논의에 착수, 2010년쯤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2004. 8. 25자),

4G(Generation)란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IMT-2000(3G) 이후에 등장할 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1980년부터 등장한 이동통신기술은 10년을 주기로 세대변화를 거듭했다. '80년대 아날로그식 1G, '90년 디지털 2G를 거쳐 2000년부터 데이터서비스 중심인 IMT-2000(3G)이 서비스되고 있다. 오는 2010년을 겨냥해 기존 IMT-2000과는 차별화된 4G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활발한 기술 및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3G인 IMT-2000의 단점 극복을 위해 나온 4G의 특징으로는 공중파에서 빠른 전송속도, 모든 서비스가 지원되는 통합 네트워크, 완벽한 글로벌 로밍 서비스와 올(All)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 네트워크 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4G는 사용자가 이동통신망·무선랜·위성 등 어떤 망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한 사용자의 단말기는 매 순간 서비스 환경을 자동으로 파악,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3G가 최대 2Mbps의 전송속도를 낸다면 4G는 이보다 500배 빠른 1Gbps로 고화질(HD)TV, 화상전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주파수 할당 등 4G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작업은 오는 2007년부터 시작해 2010년에는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